#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25

발의연월일: 2024. 7. 11.

발 의 자:추경호·강대식·강명구

강민국 · 강선영 · 강승규

고동진 • 곽규택 • 구자근

권성동 • 권영세 • 권영진

김 건 · 김기웅 · 김기현

김대식 · 김도읍 · 김미애

김민전 · 김상욱 · 김상훈

김석기 · 김선교 · 김성원

김소희 · 김승수 · 김예지

김용태 · 김위상 · 김은혜

김장겸 • 김재섭 • 김정재

김종양 · 김태호 · 김형동

김희정 • 나경원 • 박대출

박덕흠 • 박상웅 • 박성민

박성훈 • 박수민 • 박수영

박정하 • 박정훈 • 박준태

박충권 • 박형수 • 배준영

배현진 • 백종헌 • 서명옥

서범수 · 서일준 · 서지영

서천호 · 성일종 · 송석준

송언석 • 신동욱 • 신성범

안상훈 • 안철수 • 엄태영

우재준 · 유상범 · 유영하 유용원 · 윤상현 · 윤영석 윤재옥 · 윤한홍 · 이달희 이만희 · 이상휘 · 이성권 이양수 · 이인선 · 이종배 이종욱 · 이철규 · 이헌승 인요한 · 임이자 · 임종득 장동혁 · 정동만 · 정성국 정연욱 · 정점식 · 정희용 조경태 · 조배숙 · 조승환 조연희 · 조정훈 · 조지연 주진우 · 주호영 · 진종오 최보윤 · 최수진 · 최은석 의원(108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현행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후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시작으로 현재 4차 기본계획(2021년 ~ 2025년)을 수립하기까지 다양한 정책을 도입·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을 기록하는 등 심각한 저출생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또한 저출생과 함께 2025년에는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인구구조 변화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음.

하지만 현재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정책 범위를 저출산

과 고령사회 대응에 한정하고 있으며 여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 단체에 흩어져 있는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총괄·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함.

이에 현재의 저출생 상황을 반전시키고 인구변화로 인한 사회적 충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전부 개정하여 정책의 범위를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확대하고, 인구전략기획부장관에게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 권한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위기대응정책을 평가하고 환류하는 등 강력한 기획·조정 권한을 부여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률 제 호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인구위기대응기본법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출생·고령화 및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을 실현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인구의 고령화"라 함은 전체인구에서 노인의 인구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 2. "인구위기대응정책"이라 함은 저출생·고령화 및 인구의 국가 간

- 이동 등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인구의 총량 및 구성이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를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인구위기대응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인구위기대응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인구위기대응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인구 위기대응정책 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국민의 책무) ① 국민은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인 구위기대응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② 국민은 가정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상호연대를 강화하고 각자의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충실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는 인구위기대응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인구위기대응정책의 수립, 저출생 관련 예산의 사전심의 및 추진체계

- 제7조(인구위기대응정책의 총괄·조정) 인구위기대응정책은 인구전략기 획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총 괄·조정한다.
- 제8조(인구위기대응정책 기본계획) ①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은 인구위기대응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예산의 전략적투자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인구위기대응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②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 11조에 따른 인구위기대응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 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인구위기대응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 2. 이전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 3. 장래 인구구조 변동 예측 및 인구구조 변동에 따른 경제·사회적 영향
  - 4. 기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 5. 인구위기대응정책에 대한 중장기 투자 목표 및 분야별 투자재원 배분 방향
  - 6. 그 밖에 인구위기대응정책의 추진 및 전략적 투자를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안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안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 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제7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안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행 계획안(이하 "시행계획안"이라 한다)이 확정된 경우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중 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의 이행상 황을 기본계획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해의 시행계획안 및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5월 31일까지 인구전략기획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일·가정양립, 양육·돌봄, 주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출생 관련 사업(이하 "저출생 관련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예산요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시행계획안 및 예산요구서를 조정 및 심사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제11조에 따른 인구위기대응위원회의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 인구위기대응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
- 2. 인구위기대응사업의 분야별 · 사업별 투자우선순위
- 3. 다음 연도 인구위기대응사업의 시행계획
-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출생 관련 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내역
- 5.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구위기대응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구조 변화 및 대응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하여 심층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연도 저출생 관련 사업 예산 편성 시 국가 재정총량 규모 조정, 기금·회계 건전성 관리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1조에 따른 인구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⑦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은 다음 연도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경우이를 반영하여 시행계획을 확정한다.

- ⑧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업무의 협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안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구구조 변화 및 대응 관련 계획 및 정책,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 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1조(인구위기대응위원회) ① 인구위기대응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구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중·장기 인구변화추이 예측, 사회·경제 적 영향 및 전망에 관한 사항
  - 2. 인구위기대응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 3.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4.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5.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평가 등 인구위기대응정책의 평가에 관한

사항

- 6.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인구위기대응정책의 조정에 관한사항
- 7. 그 밖에 인구위기대응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장은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2호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2. 인구위기대응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 장이 위촉하는 자
- 3. 기타 다양한 의견 반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 ⑤ 위원회는 인구위기대응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국회보고) 정부는 기본계획·시행계획 및 이에 대한 평가 등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장 인구위기대응정책의 평가 및 조정 등

- 제13조(인구위기대응정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①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은 매년 인구위기대응정책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이하 "평 가등"이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은 인구위기대응정책의 평가등을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연구기관, 기업 및 단체에 필 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중 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연구기관, 기업 및 단체는 특별한 사 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인구위기대 응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가등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평가등의 범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전문 조사·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은 인구 위기대응정책의 수립·조정, 평가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 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 연연구기관이나 그 밖에 전문인력 및 조사·연구능력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위원회가 심의하는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에 대한 지원
- 2.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대한 지원
- 3. 제9조제3항에 따른 저출생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의 배분·조정 등에 대한 지원
- 4. 제13조에 따른 인구위기대응정책의 평가등에 대한 지원
- 5. 제15조에 따른 저출생 정책의 협의 · 조정 및 기획에 대한 지원
- 6. 지역별 인구 및 산업별 인력수급 전망에 대한 연구 및 평가
- 7.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 등 각 생애주기별로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위 기대응정책에 대한 기획·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③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전문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 ④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등 수행하는 업무가 그 지정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⑤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및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저출생 관련 정책의 협의·조정 및 기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는 사회보장제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출생 관련 정책(이하 이 조에서 "저출생 정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인구전략기획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협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출생 정책을 신설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구전략 기획부장관과 미리 해당사업의 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통보 또는 제2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은 해당 사업과 그 밖의 저출생 정책 간의 중복을 방지하고해당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협의를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통보를 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견을제시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이 제 3항에 따라 제시한 의견을 존중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 에 따른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⑤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은 저출생 대응을 위해 필요한 새로운 저출생 관련 사업을 기획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에게 해당사업을 다음 연도 예산 요구 시 포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제4장 인구위기대응정책의 기본방향

- 제16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 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고자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지원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17조(안정적인 결혼·출산을 위한 주거 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안정적인 결혼과 출산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 안정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18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 ·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 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19조(고용과 소득보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할 의욕과 능력

- 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제도 등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민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20조(건강증진과 의료제공)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연령별 건강상의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을 위한 의료·요양 제도 등을 확립· 발전시키고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1조(생활환경과 안전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생활에 필요한 기능과 설비를 갖춘 주거와 이용시설을 마련하고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쾌적한 노후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재해와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22조(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의 여가와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 등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23조(평생교육과 정보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세대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교육시설의 설치·인력의 양성 및 프

로그램의 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세대간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장비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한다.
- 제24조(노후설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설계하기 위하여 재무, 건강, 여가, 사회참여 등 각 분야에서 적절한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 다.
- 제25조(취약계층노인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노인·장애노인 등 취약계층의 노인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고 도시·농어촌지역 가 격차 등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26조(가족관계와 세대간 이해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효행을 장려함으로써 노인이 가정과 사회에서 공경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대간 교류의 활성화와 세대간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가 형성되도록 필요한 사회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27조(경제와 산업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경제·산업구조 및 노동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 여야 한다.
- 제28조(고령친화적 산업의 육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고 령화에 따른 상품 및 서비스 수요의 변화에 대비한 새로운 산업을 육 성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에게 필요한 용구와 용품 등의 연구개발·생산 및 보급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9조(인구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지원) ① 국가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외 거주하는 사람의 국내 유입에 관한 적정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 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30조(인구교육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저출생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양육의 사회적 의미와 생명의 존엄성 및 가족구성원의 협력의 중요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5장 보칙

- 제31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연구소·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전문인

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해당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2조(민간의 참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위기대응정책에 관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33조(인구의 날) ①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파급영향에 대하여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인구구조 변화대응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정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 보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4조(국제교류의 활성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구조 변화와 관 련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참여하고, 정보교환 및 공동조사연구 등 국제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 제35조(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인구위기대응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의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위기대응정책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아동수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0조의2(첫만남이용권 지급)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출생아동 명의의 계좌에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
  - ③ 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은 출생아동의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용권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권의 지급 대상·금액·방법, 이용기한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모성(母性) 및"을 "모성(母性)·태아(胎兒) 및"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모성과"를 "모성·태아 및"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제 공,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을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인구위기대응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인구위기대응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한다.

④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인구위기대응기본법」 제8조에 따른 인구위기대응정책 기본계획"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를 "「인구위기대응기본법」 제9조"로 한다.

제8조제1항 중"「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위기대응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인구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 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인구위기대응기본법」 제8조에 따른 인구위기대응정책 기본계 획

⑥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인구위기대응기본법」 제8조에 따른 인구위기대응정책 기본계획"으로 한다.

- ⑦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정부는 「인구위기대응기본법」 제8조에 따른 인구위기대응정책 기본계획"으로 한다.
- 제3조(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수립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은 이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인구위기대응정책 기본계획·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이 법에 따른 인구위기대응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본다.
- 제4조(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심의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이 법에 따른 인구위 기대응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
- 제5조(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임기)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 전날 만료된 것으로 본다.

-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에 따른 인구위기대응위원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